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2 발의연월일: 2024. 6. 21.

발 의 자: 김선교·서천호·김성원

구자근 · 김예지 · 우재준

김위상 • 윤한홍 • 김상훈

송석준 · 서지영 · 최수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수상레저활동에 참여하는 국민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5년 간 현행법을 위반하여 무면허조종으로 적발된 건수가 2019년 68건, 2020년 95건, 2021년 95건, 2022년 80건, 2023년 103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무면허조종으로 2회 이상 적발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 2회이상 적발된 자에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여 무면허조종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무면허조종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신설).

법률 제 호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는 1년 이상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1조(벌칙) <u><신 설></u>	제61조(벌칙) ① 제25조 각 호 외
	의 부분 본문을 2회 이상 위반
	하여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
	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
	<u>하의 벌금에 처한다.</u>
(생 략)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
	승)